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의정구현

의안번호	제45호
------	------

<p>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
--

제 출 자	김남충 의원 외 5명
제출연월일	2023. 4. 11.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5호

발의연월일 : 2023. 4. 11.

대표발의자 : 김남충

공동발의자 : 조배식, 조용훈,
서승필, 홍태의,
허명숙

1. 제안이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기준 중 악취저감 등 현대화하는 경우 증축, 신축 이전을 일부 허용하여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현대화 시설” 신설(안 제7조의2)

-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신설

나. ‘가축사육 제한지역’ 을 ‘가축사육 제한구역’ 으로 명칭 통일 (제7조 및 제8조의2)

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일부 증축 및 신축 이전 허용 (별표 1)

-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의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외 지역 내 증축 일부 완화

- 주거밀집지역 내 배출시설을 주거밀집지역 경계선 밖으로 신축 이전 일부 허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기타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입법예고 : 2023. 4. 11. ~ 4. 15.(5일간)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의 지정)”을“(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한지역”을“제한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대화 시설) 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별표 3]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의2 중“가축사육제한지역”을“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존 제한구역 경과조치) 조례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에 따라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4 축사란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배출시설(우사)의 증축으로서 약취저감 목적의 현대화사업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 면적의 900㎡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논산시의회 의원	김남충 의원 외 5명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7조 및 제8조의2 관련)

구분	제한구역	비고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다만,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하여 주민동의 없이 기존 배출시설 면적 900㎡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가축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해 소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같은 법정리 내 지역에 2,000㎡이하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한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회에 한함).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전까지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제7조의 2 관련)

(공 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현대화 시 기존 배출시설도 악취 저감 조치하여야 한다. 2. 퇴비사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2m 이상으로, 유출방지턱은 20cm 이상으로 설치하며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3. 퇴비 고속발효기 및 액비 발효기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급속 처리하는 시설은 밀폐화하고, 비가림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퇴비 고속발효기 탈취시설 전단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터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고정식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축 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 고
돼지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축사의 경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식 악취저감(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재래식 돈사로 구조상 세정식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밀폐화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안 분뇨를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 사료찌꺼기 및 퇴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조 및 고액분리기는 밀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고액분리하는 공간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하여 액비를 생산하거나, 위탁처리 위해 농도를 낮추는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사는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부 독립형 액비저장조는 비가림 시설 및 밀폐화 하여야 한다. ○ 정화방류 시설은 원수조의 밀폐화 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며 최종 방류수는 사업장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소 젓소 말 양 (염소포 합)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의 경우 착유실 이동 중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을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경로는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먹이그릇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운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건축재료로 시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착유실은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청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젓소 10cm로 깔고 털에 분뇨가 묻기 시작할 때 교체하여야 한다. ○ 깔짚 우사가 아닌 경우 분과 노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와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개분무장치 설치 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폭 4m 이상 경우 2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가동시간(1분 단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 노즐배관은 전용배관(PE, 라이론, SUS 등)을 선정하며, 노즐과 노즐 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cc~200cc/min 이상 분사 가능한 노즐과 압력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칸막이 경우 개폐 또는 가축들의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칸막이에 고무바킹 부착 또는 이와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하되, 빗물이 바람에 의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착유실 정화처리시설은 스크린(거름망)을 설치하고 적산전력계 및 방류수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닭, 오리, 메추리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계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며 강제 배기 팬 최고 상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 배기는 축사 측면 배기하도록 설계하며 배기 팬에는 바이오커튼을 설치, 방진망은 햇빛에 의한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 내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절기 축사 온도조절을 위한 쿨링포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상부로 강제 배기 되는 경우 배기장치 흡입 전단에 닭털 날림을 방지 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는 밀폐형으로 설치하며 이송 중 바닥에 떨어지는 분노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란계 알 세척 경우 세척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 분노저장시설, 건조시설은 밀폐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하차량이 계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근 도로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바퀴에 묻는 분노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노를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동과 동 사이 청소공간을 1.5~2m 이상 확보 하여야 한다. ○ 분노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프레퍼 처리방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처리방법을 적용 하여야 한다. ○ 잔반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시적 짖는 소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사 경계부지 밖이 보이지 않는 3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사육은 깔짚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내 교반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하며 수분조절제를 통한 호기성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뇨의 보관을 위하여 밀폐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FRP, PE 탱크를 매설 할 수 있다. 	

<p>※ 악취방지계획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발물질을 조사하여 적합한 악취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방지대책은 발생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해 마련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최종 처리계획(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축종별, 사육형태별,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악취방지시설의 충분한 성능 유지를 위해 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계·기구류, 배관 및 소모품 등의 유지·관리 및 교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취방지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약품, 온도, 습도, pH, 여재 또는 미생물 관리 등) - 악취방지시설별 소모품(세정수 등) 교체주기 - 겨울철 동파 방지대책 - 악취포집배관의 응축수 배출 및 부식방지 방안 - 악취방지시설 및 송풍기 등의 성능유지 및 고장 시 대책 마련 - 가축분뇨배출시설 내 오염시설의 주기적 청소 방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9.(생 략)</p> <p>제7조(가축사육의 <u>제한지역</u>의 지정)</p> <p>① (생 략)</p> <p>②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u>제한지역</u>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여 가축사육 <u>제한지역</u>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때 지형도면 변경고시 이전 주택증감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지형도면 변경고시전까지는 기존의 지형도를 따른다.</p> <p><신 설></p>	<p>제2조(정의) ----- -----.</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7조(가축사육의 <u>제한구역</u>의 지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제한구</u> <u>역을</u>----- ----- -----<u>제한구역의</u>----- ----- -----.</p> <p>제7조의2(<u>현대화 시설</u>) <u>기존의 배출시설, 처리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저감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도록 [별표 3] 기준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u></p>
<p>제8조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법 제8조의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u>가축사육제한지역</u>은 별표1과 같다.</p>	<p>제8조2(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 -----<u>가축사육 제한구역</u>은-----.</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7조 및 8조의2 관련)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7조 및 8조의2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구 분	제 한 구 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내 자연취락지구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 집단주거지역(80세대이상 공동주택) 부지(단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500미터 이내 지역	도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그 인접지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신 설>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부지경계선까지 직선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 시설의 증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20 조제3항 및 별표24에 따른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는 제외) ①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이상 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의 경우 건축주 포함) ②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에서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방지시설 설치로, 구조상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이 경우, 가축 사육 면적의 증가는 불가함) ○ < 신 설 >	도시지역 및 그 인접지역 외 지역 외 지역	○ (현행과 같음) ○ ----- ----- ----- ----- ----- ----- (다만,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지역내 소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한하여 주민동의 없이 기존 배출시설 면적 900㎡ 이상은 1,500㎡미만 까지, 450㎡이상은 900㎡미만 까지, 100㎡이상은 450㎡미만 까지 증축이 가능하며, 가설 건축물로의 증축은 불가하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악취 등 환경개선을 위해 소에 한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200m이내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300m이상 떨어진 같은 법정리 내 지역에 2,000㎡이하로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한 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회에 한함). 단, 기존 축사는 신규 축사 준공전까지 철거하거나 용도변경 하여야 한다.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 제한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2,0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500m 이내	
지방자치 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지방자치 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내 - 소, 젓소, 양, 염소, 사슴, 말 : 600m 이내
< 신 설 >		1)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신축 이전하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신설></p>	<p>[별표 3]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 기준 (제7조의 2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공통)</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출시설 현대화 시 기존 배출시설도 악취 저감 조치하여야 한다. 2. 퇴비사는 콘크리트 옹벽으로 2m 이상으로, 유출방지턱은 20cm 이상으로 설치하며 빗물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3. 퇴비 고속발효기 및 액비 발효기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급속 처리하는 시설은 밀폐화하고, 비가림시설 및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퇴비 고속발효기 탈취시설 전단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모터를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처리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고정식 배관으로 하여야 한다.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축종</th> <th style="width: 80%;">악취저감시설 기준</th> <th style="width: 1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돼지</td> <td>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축사의 경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식 악취저감(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재래식 돈사로 구조상 세정식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밀폐화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안 분뇨를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 사료찌꺼기 및 퇴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조 및 고액분리기는 밀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고액분리하는 공간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하여 액비를 생산하거나, 위탁처리 위해 농도를 낮추는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사는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부 독립형 액비저장조는 비가림 시설 및 밀폐화 하여야 한다. ○ 정화방류 시설은 원수조의 밀폐화 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며 최종 방류수는 사업장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td> <td></td> </tr> </tbody> </table>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돼지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축사의 경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식 악취저감(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재래식 돈사로 구조상 세정식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밀폐화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안 분뇨를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 사료찌꺼기 및 퇴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조 및 고액분리기는 밀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고액분리하는 공간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하여 액비를 생산하거나, 위탁처리 위해 농도를 낮추는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사는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부 독립형 액비저장조는 비가림 시설 및 밀폐화 하여야 한다. ○ 정화방류 시설은 원수조의 밀폐화 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며 최종 방류수는 사업장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돼지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축사의 경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신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공법에 대한 악취 저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외부로 배출되는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세정식 악취저감(탈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재래식 돈사로 구조상 세정식 악취저감 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바이오필터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가축분뇨배출시설은 밀폐화 하여야 한다. ○ 배출시설 안 분뇨를 주 1회 이상 고압세척기로 청소하여야 한다. ○ 사료찌꺼기 및 퇴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조 및 고액분리기는 밀폐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고액분리하는 공간은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폭기하여 액비를 생산하거나, 위탁처리 위해 농도를 낮추는 시설은 악취저감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퇴비사는 밀폐화 및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사업장 외부 독립형 액비저장조는 비가림 시설 및 밀폐화 하여야 한다. ○ 정화방류 시설은 원수조의 밀폐화 또는 악취저감 시설 설치하며 최종 방류수는 사업장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신 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13 324 885 347">축종</th> <th data-bbox="885 324 1380 347">악취저감시설 기준</th> <th data-bbox="1380 324 1436 347">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3 347 885 1948"> <p>소 젓소 말 양 (염소 포함)</p> </td> <td data-bbox="885 347 1380 1948">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의 경우 착유실 이동 중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을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경로는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먹이그릇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운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건축 재료로 시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착유실은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청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젓소 10cm로 깔고 털에 분뇨가 묻기 시작할 때 교체하여야 한다. ○ 깔짚 우사가 아닌 경우 분과 노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와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개분무장치 설치 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폭 4m 이상 경우 2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시간(1분 단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노즐배관은 전용배관(PE, 라이론, SUS 등)을 선정하며, 노즐과 노즐 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cc~200cc/min 이상 분사가 가능한 노즐과 압력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칸막이 경우 개폐 또는 가축들의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칸막이에 고무바킹 부착 또는 이와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하되, 빗물이 바람에 의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착유실 정화처리시설은 스크린(거름망)을 설치하고 적산전력계 및 방류수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td> <td data-bbox="1380 347 1436 1948"></td> </tr> </tbody> </table>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p>소 젓소 말 양 (염소 포함)</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의 경우 착유실 이동 중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을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경로는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먹이그릇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운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건축 재료로 시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착유실은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청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젓소 10cm로 깔고 털에 분뇨가 묻기 시작할 때 교체하여야 한다. ○ 깔짚 우사가 아닌 경우 분과 노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와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개분무장치 설치 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폭 4m 이상 경우 2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시간(1분 단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노즐배관은 전용배관(PE, 라이론, SUS 등)을 선정하며, 노즐과 노즐 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cc~200cc/min 이상 분사가 가능한 노즐과 압력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칸막이 경우 개폐 또는 가축들의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칸막이에 고무바킹 부착 또는 이와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하되, 빗물이 바람에 의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착유실 정화처리시설은 스크린(거름망)을 설치하고 적산전력계 및 방류수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p>소 젓소 말 양 (염소 포함)</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젓소의 경우 착유실 이동 중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출방지턱을 20cm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경로는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운동장을 설치할 경우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급수시설 및 먹이그릇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운동장 바닥은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건축 재료로 시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 착유실은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청소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정화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 깔짚의 두께는 한우 5cm, 젓소 10cm로 깔고 털에 분뇨가 묻기 시작할 때 교체하여야 한다. ○ 깔짚 우사가 아닌 경우 분과 노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상세한 설계서와 처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대화 시 악취저감 안개 분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개분무장치 설치 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폭 4m 이상 경우 2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동시간(1분 단위)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노즐배관은 전용배관(PE, 라이론, SUS 등)을 선정하며, 노즐과 노즐 간격은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160cc~200cc/min 이상 분사가 가능한 노즐과 압력펌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칸막이 경우 개폐 또는 가축들의 부딪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칸막이에 고무바킹 부착 또는 이와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시설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하되, 빗물이 바람에 의해 처리시설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착유실 정화처리시설은 스크린(거름망)을 설치하고 적산전력계 및 방류수량을 알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p>[별표 3] <신 설></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813 324 885 347">축종</th> <th data-bbox="885 324 1380 347">악취저감시설 기준</th> <th data-bbox="1380 324 1436 347">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813 347 885 1344"> <p>닭, 오리, 매추리</p> </td> <td data-bbox="885 347 1380 1344">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계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며 강제 배기 팬 최고 상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 배기는 축사 측면 배기하도록 설계하며 배기 팬에는 바이오커튼을 설치, 방진망은 햇빛에 의한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 내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절기 축사 온도조절을 위한 쿨링포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상부로 강제 배기 되는 경우 배기장치 흡입 전단에 닭털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는 밀폐형으로 설치하며 이송 중 바닥에 떨어지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란계 알 세척 경우 세척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 분뇨저장시설, 건조시설은 밀폐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하차량이 계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근 도로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바퀴에 묻는 분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td> <td data-bbox="1380 347 1436 1344"></td> </tr> <tr> <td data-bbox="813 1344 885 2016"> <p>개</p> </td> <td data-bbox="885 1344 1380 2016">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를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동과 동 사이 청소공간을 1.5~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프레퍼 처리방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잔반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시적 짖는 소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사 경계부지 밖이 보이지 않는 3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사육은 깔짚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내 교반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하며 수분조절제를 통한 호기성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의 보관을 위하여 밀폐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FRP, PE 탱크를 매설 할 수 있다. </td> <td data-bbox="1380 1344 1436 2016"></td> </tr> </tbody> </table>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p>닭, 오리, 매추리</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계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며 강제 배기 팬 최고 상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 배기는 축사 측면 배기하도록 설계하며 배기 팬에는 바이오커튼을 설치, 방진망은 햇빛에 의한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 내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절기 축사 온도조절을 위한 쿨링포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상부로 강제 배기 되는 경우 배기장치 흡입 전단에 닭털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는 밀폐형으로 설치하며 이송 중 바닥에 떨어지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란계 알 세척 경우 세척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 분뇨저장시설, 건조시설은 밀폐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하차량이 계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근 도로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바퀴에 묻는 분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개</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를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동과 동 사이 청소공간을 1.5~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프레퍼 처리방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잔반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시적 짖는 소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사 경계부지 밖이 보이지 않는 3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사육은 깔짚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내 교반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하며 수분조절제를 통한 호기성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의 보관을 위하여 밀폐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FRP, PE 탱크를 매설 할 수 있다. 	
축종	악취저감시설 기준	비고								
<p>닭, 오리, 매추리</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형 계사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강제 배기 하는 경우 닭털 날림 방진망을 설치하며 강제 배기 팬 최고 상부보다 2배 이상 높게 측면 3면에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제 배기는 축사 측면 배기하도록 설계하며 배기 팬에는 바이오커튼을 설치, 방진망은 햇빛에 의한 부식으로 주기적인 교체를 해주어야 한다. ○ 내부 악취저감을 위한 안개분무시설 또는 그에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하절기 축사 온도조절을 위한 쿨링포그 겸용으로 사용 가능 ○ 재래식 계사의 경우 상부로 강제 배기 되는 경우 배기장치 흡입 전단에 닭털 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 이송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는 밀폐형으로 설치하며 이송 중 바닥에 떨어지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산란계 알 세척 경우 세척수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위탁 처리 하여야 한다. ○ 분뇨저장시설, 건조시설은 밀폐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출하차량이 계사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인근 도로로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장 내 바퀴에 묻는 분뇨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p>개</p>	<p><배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뇨를 처리하기 용이한 구조여야 하며 동과 동 사이 청소공간을 1.5~2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스프레퍼 처리방법 또는 이와 상응하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잔반사료를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냉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일시적 짖는 소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축사 경계부지 밖이 보이지 않는 3m 이상의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p><처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의 사육은 깔짚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퇴비사 및 퇴비저장시설 내 교반할 수 있도록 여유를 확보하며 수분조절제를 통한 호기성 분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의 보관을 위하여 밀폐구조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FRP, PE 탱크를 매설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 신 설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악취방지계획 제시</p> <p>○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발물질을 조사하여 적합한 악취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악취방지대책은 발생단계에서 최종단계까지 전과정에 대해 마련하여야 한다.</p> <p>-악취방지계획 수립 시 가축분뇨의 최종 처리계획(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축종별, 사육형태별,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따른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 악취방지시설의 충분한 성능 유지를 위해 방지시설에 포함된 기계·기구류, 배관 및 소모품 등의 유지·관리 및 교체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p> <p>-악취방지시설의 성능유지를 위한 기술적 사항(약품, 온도, 습도, pH, 여재 또는 미생물 관리 등)</p> <p>-악취방지시설별 소모품(세정수 등) 교체주기</p> <p>-겨울철 동파 방지대책</p> <p>-악취포집배관의 응축수 배출 및 부식방지 방안</p> <p>-악취방지시설 및 송풍기 등의 성능유지 및 고장 시 대책 마련</p> <p>-가축분뇨배출시설 내 오염시설의 주기적 청소 방안</p> </div>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② ~ ⑤ (생 략)